



건설교통부

수신 고객만족센터장

(경유)

제목 지표면 관련 질의회신(고객만족센터)

1.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귀 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.(관련문서 : 고객만족센터-3725, 2007.12.06)

2. 질의 요지

가. 「건축법」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건축할 대지의 지표면에 3미터 이상의 고저차가 있고, 인접한 대지(건축물이 없는 경우 또는 있는 경우)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?

나. 민원서류에 대한 건축기획팀 의견은 ?

3. 회신 내용

가.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 호(제10호를 제외)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나.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동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산정하며 제5호 나목의 규정 적용 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허가권자가 인접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끝.

건축기획팀장

수신자

주무관

시설사무관

팀장

협조자

시행 건축기획팀-6859 (2007. 12. 17.)

접수

우 427-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(중앙동 1번지)

/ <http://www.moct.go.kr>

전화 02-2110-8544 전송 02-503-7324 / unamuno76@moct.go.kr

/ 공개